

**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,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**

(제16조 관련)

교육훈련 과정	교육훈련 대상자	교육훈련 내용
1. 기초교육	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만운송의 기초이론, 화물취급 실무 및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리 등</li> <li>· 항만안전,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습</li> </ul>
	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(이하 “항운노동조합” 이라 한다)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	
2. 양성교육	항만하역장비의 운전·조작 및 정비 등과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만하역장비의 구조와 특성</li> <li>· 항만하역장비의 운전·조작 및 정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/ul>
	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 및 야드-트레일러(yard-trailer)운전을 수행하려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동차운반전용선의 선적작업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야드-트레일러 운전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/ul>
	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	· 항만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
	검수·감정·검량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려는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하려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등의 검수·감정·검량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청렴 등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3. 안전교육	항만 내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람 또는 배치될 사람	· 위험물취급에 관한 이론과 실습
	항만하역작업의 현장 종사자 및	· 항만하역작업의 안전관

	감독업무 수행자	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
4. 연수교육	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「개항질서법」 등 항만운송 관련 법령</li> <li>· 항만운영 관리자 및 현장 감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이론</li> </ul>
	항운노동조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만물류,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항만운영의 효율화 관리 기법</li> <li>· 그 밖의 항만하역작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/ul>
	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컨테이너 항만인력 개발 계획 프로그램(PDP)</li> <li>· 터미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/ul>
5. 정보교육	항만운송사업자 등의 임직원,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및 컴퓨터 운용능력의 습득을 원하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자문서 교환 등 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실습</li> <li>· 컴퓨터 기초이론 및 운용능력 실습</li> <li>· 인터넷, 웹디자인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그래픽 등 응용프로그램의 교육 및 실습</li> </ul>
6. 특별교육	정부와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의 위탁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된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만하역장비의 운전·조작·정비 및 관리 기술</li> <li>· 항만물류, 농수산물유통 및 국제유통에 관한 이론과 실습</li> <li>· 그 밖의 항만 관련 기술 및 운영관리</li> </ul>

비고: 각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세부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기관  
이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